



'언제나 환영할게'

장애인도우미견 이해하기



장애인도우미견이란

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도와주도록 훈련된 개

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와 통합사회복지사회를 이루는데 기여

소외되고 외로운 장애인들에게 인생의 동반자





국내 장애인도우미견 훈련기관


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



삼성화재안전학교
(사진출처: 상동)

“ 국내 단 2곳 ”
일본 28곳, 미국 80여곳

시각장애인도우미견(Guide dog): 시각장애인을 보조하여 도우미 역할을 하는 특수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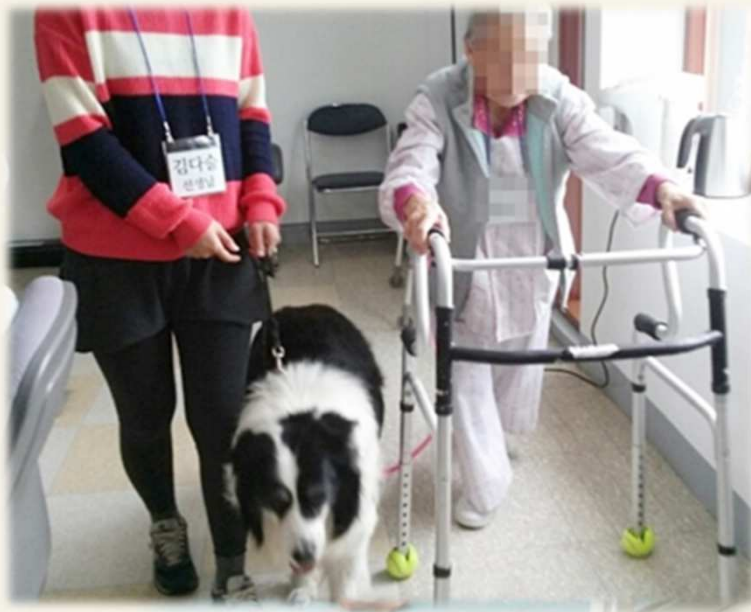
지체장애인도우미견(Service dog) : 지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특수견



청각장애인도우미견(Hearing dog) : 소리의 근원지를 알려주도록 훈련 받은 특수견



치료도우미견(Therapy Dog) : 정서적 안정과 상호작용을 통한 환자치료에 도움을 제공



장애인도우미견의 탄생과정



우수한
후보견
확보



사회화
교육과정
(퍼피워킹)



전문
훈련과정
(특수훈련)



장애인에게
분양

장애인도우미견을 만났을때의 에티켓



장애인도우미견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.
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후 쓰다듬어주세요.

먹이를 주거나 유혹하면 안돼요.
안내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.



안내하는 도우미견의 앞길을 막거나 장난치지 말아주세요.
또 안내견을 불러서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해주세요.

□ 장애인복지법

○ 제40조(장애인 보조건의 훈련·보급 지원 등)

- 제3항 누구든지 보조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**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**

○ 제90조(과태료)

-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**한다
 - 3.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건 표지를 붙임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, 장애인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


Thank You